

한미 FTA 협상결과 및 대책

〈산림청〉

I. FTA(자유무역협정) 개요 및 의의

◎체결목적

- 협상 국가 사이의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상품 교역을 활성화함으로써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

◎필요성

- 우리나라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70%에 달하여 수출 경쟁력과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
- 특히, 미국은 약 2조억\$의 수입규모를 가진 세계최대 시장으로서 FTA 체결로 일본·중국과의 수출 경쟁에서 유리

◎체결현황

- '07. 3월 현재 전세계적으로 197건이 발효 중이며 점차 중요성이 커져가는 추세
 - (70년대 이전) 5개 → (70년~80년대) 22개 → (90년대) 64개 → (2000년 이후) 106개 체결
- 우리나라의 FTA 현황

구분	협상발효	협상타결	협상진행	협상예정
계	3	2	4	3
국가명	칠레, 싱가포르, 유럽자유무역연합(EFTA)	미국, 아세안	캐나다, 인도, 일본, 멕시코	유럽연합(EU), 중국, 르코수르

II. 한미 FTA 협상결과

1. 협상 개요

- 2006년 2월 협상출범을 선언하고 양국간 치열한 협상 진행
 - 그동안 여덟 차례 협상, 두 차례 고위급 협의를 통해 쟁점 논의
 - 협상분야별로 상품, 농업, 원산지, 섬유 등 17개 분과, 2개 작업반에서 협상 진행
- 협상 개시 1년 2개월만에 극적으로 협상 타결 (4.2)
 - 3. 26~4. 2 새벽까지 열린 장관급 협상에서 최종 타결
 - 전체적으로 협상내용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

2. 전체 협상결과

- 상품분과협상은 양허 제외품목 없이 100% 관세 철폐하였으며, 그 중 94%가 조기철폐(3년내)에 합의
 - 상대국 수출상품에 대한 수출세 부과금지, 상품위원회 설치에 합의
 - 우리 측 임산물·수산물에 대한 민감성 확보, 미국의 3,000CC이하 승용차 관세 즉시 철폐
- 농업분과협상은 우리 측 민감품목에 대한 다양한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영향 최소화
 - 쌀 및 쌀관련 상품은 관세 양허 제외

- 쇠고기· 돼지고기· 인삼· 양파 등 민감품목은 특별세이프가드제도, 수입쿼터(TRQ) 제도, 장기간 관세철폐, 계절관세 등 다양한 관리 방식을 활용하여 민감성 반영

- 나머지 품목은 대미 수입액, 현행 관세율, 우리측 민감도에 따라 5년~12년 동안 매년 관세 균등 철폐(89개품목)

3. 임산물 협상결과

가.협상총괄개요

- 임업분야 양허협상은 우리 임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장기철폐 또는 예외적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
- 협상대상 품목은 목재류·석재·단기임산물 등 총 354개로서 단기임산물(108개)은 농업분과, 목재류(246개)는 상품분과에서 협상
 - 우리청은 농업분과와 상품분과 협상에 참여
 - 우리청 민감품목 : 단기임산물(호도·밤·잣 등), 목재류(합판·보드류)
- 미측은 상품분과에서는 예외없는 시장개방을, 농업분과에서는 세이프가드 불인정, 미측 관심품목의 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
 - 미국 측 관심품목 : 단기임산물(호도, 아몬드, 피스타치오 등 견과류), 목재류(제재목, 합판·보드류, 목재가공품 등)
- 우리가 체결한 여타 FTA에 비해서는 양허수준이 높으나 우리측 민감품목은 대부분 10년 이상 장기철폐로 타결하여 충격을 최소화
 - 임업분야 협상대상 품목의 40%인 143개를 10년 이상 장기철폐 품목으로 타결
 - 단기임산물 79개(밤, 잣, 대추, 표고버섯 등), 목재류 64개(합판, 섬유판, 파티클보드 등)

나.단기임산물양허

- 밤, 잣, 호도, 버섯류 등 전체 품목의 12% 이상이 15년 이상의 관세철폐 기간 확보
- 농산물 전체로는 15년 이상 관세철폐가 전체 품목의 10% 이상 수준
- 국내 생산이 없거나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(아몬드, 피스타치오)은 관세를 즉시 철폐

〈단기임산물 (108개)〉

양허유형	주요 품목
15년 철폐	• 표고버섯(관세 45%), 밤(관세 219.4%), 잣(관세 566.8%), 조제저장밤(관세 50%), 마롱글라세(관세 30%), 호도(미탈각), 조제저장송이 등 13개
12년 철폐	• 일시저장 고사리(관세 30%), 대추(관세 611.5%) 등 6개
10년 철폐	• 송이버섯(관세 30%), 산림수(분재용 포함)(관세 8%), 고사리·감·송로·죽순·참뿌리(관세 27~45%), 레진·수피(관세 3%), 도토리(관세 5%), 헤즐너트·이끼(관세 7~10%), 목이버섯(관세 30%) 등 60개
7년 철폐	• 죽순(관세 20%), 기타 견과류(관세 30%) 등 3개
6년 철폐	• 호도(탈각) 1개
5년 철폐	• 초피·생칠·등나무(관세 8%), 잎(떡갈·멍개)(관세 5%), 맹금류·새의털·뿌리(관세 5~8%) 등 19개
즉시 철폐	• 종자류(관세 0%), 아몬드, 피스타치오 등 6개

다.목재류등양허

- 우리측 민감품목(OSB, 섬유판, 합판 등 10개) 중 초민감 5개품목(OSB 2, PB 1, 섬유판 1, 합판 1)은 비선형감축 10년 철폐, 5개 민감품목은 10년 균등철폐로 타결
 - 나머지 품목은 우리측 민감도 수준에 따라 10년 철폐(54개), 5년 이하 철폐(182개)로 타결
 - ※ 비선형 감축 : 이행초기는 소폭 감축 후 이행 말기에는 큰폭으로 감축하는 관세감축 방식이며, OSB, 파티클보드, 섬유판, 합판 등 초민감 5개 품목이 해당
- 원목, 목재칩, 석재류 등 이미 시장이 개방되어 있거나 산업원료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세를 즉시 철폐

〈목재류 등 (246개)〉

양허유형	주요 품목
10년 철폐	• 합판(관세 8~12%), 마루판·조립식 목조건축물(관세 8%) 등 64개
5년 철폐	• 성형목재, 목재의 봉, 목재상자, 목재장식용품, 목재생활용품(관세 8%) 등 55개
3년 철폐	• 단판(관세 3%), 제재목(관세 5%) 등 61개
즉시 철폐	• 석재류(관세 3%), 원목(관세 0%), 목재칩 등 66개

4 협정문 주요내용 및 임업 이외의 분과 협상결과

○단기임산물협정문

- 수입쿼터 관리방법에 대해 당초 미측은 선착순 관리방식을 고집했으나, 선착순·수입권 공매·과거 실적기준 배분 등 다양한 방식 도입
- 임산물 셰이프가드는 밤, 호도를 포함코자 하였으나 미측에서 이를 수용하는 대신 일정 물량 무관세 수입쿼터를 인정해 달라는 입장 이어서 임산물은 셰이프가드 적용을 철회

○목재류등협정문

- 미국측의 물품취급 수수료(수출액의 0.21% 부과)를 철폐토록 관철
- 협상 기준세율에 조정관세를 포함토록 주장하여 우리측 의견 반영
 - 우리 측 조정관세 부과품목 : 합판 11개(8→12%), 표고버섯 2개(30→45%)
- 미국측의 수출 관세환급 불가조항 반영요구를 우리 측 반대로 철회

○임업이외의분과협상결과

- 위생 및 검역(SPS) 분과
 - FTA 발효 이후 양국간 SPS 현안에 대한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SPS 위원회 설치(단, 동 위원회가 통상압력을 주지 않도록 명문화)
 - SPS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FTA에서 별도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WTO 협정을 준수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

○ 원산지 분과

- 신선 임산물 및 민감 임산물은 완전생산 기준, 단순 가공공정 불인정 등으로 제3국산의 우회 수입가능성 차단

5 한미 FTA의 영향

○단기임산물

- ▲ 아몬드, 피스타치오를 제외한 견과류의 경우 관세 12~15년 균등폐지로 단기적인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
- ▲ 중장기적으로는 수입대체 관계에 있는 밤, 잣 등 수실류의 생산 및 소비에 다소 영향 전망
 - 호도에 대한 관세 철폐로 수입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호도 생산 및 소비에 다소 영향 전망
 - 탈각호도는 관세가 6년 균등 철폐되어 다소 수입 증가 예상
 - 밤, 잣, 대추 등의 단기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나, 아몬드·피스타치오 등 견과류 수입 증가 시 수실류의 간접적인 피해가 다소 예상됨.

○목재류

- ▲ 목재류는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가 장기간(10년) 연차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나,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산과 경쟁으로 다소 영향 예상
-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
 - 민감품목인 합판·보드류의 미국수입 비중이 0.4% 이하
 - 수입액이 많은 원목과 칩은 이미 무관세를 적용
- 중장기적으로는 보드류 산업에 다소 영향 전망
 - 관세 완전 철폐시 파티클보드와 섬유판 생산액이 약 2~3% 감소할 것으로 전망(농촌경제연구원)

III. 한미 FTA 대책 방향

1. 기본방향

- ▲ 한미 FTA 협정 발효 전에 수입급증에 따른

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협정 이행기간 동안 피해 예상품목의 경쟁력 향상

▲ 중장기 대책으로 임업구조조정 방향을 명확히 제시

- 임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경쟁력 제고 지원 강화
 - 임산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성 강화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해 수입산과 차별화
 - 우수브랜드 중심의 유통체계 개편 및 품질 인증제도 도입
- 호도·밤 등 단기소득 임산물은 소득 기반 정비 및 유통구조 개선
 -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득기반 조성 지원
 - 호도·밤의 집약적인 관리를 위해 재배면적 구조조정 추진
 - 친환경 임산물 생산 및 안전성 강화로 외국산과 차별화 추진
- 목재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
 - 산주의 목재생산·유통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지원
 - 목재산업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체계 구축
- 임업인에 대한 경영지원 및 소득 안전망 확충
 - 전문임업인 육성 및 공동소득사업 지원
 - 전문임업기술지도 및 경영컨설팅 실시

2 품목별 경쟁력 제고 지원

가. 단기소득임산물

〈생산분야〉

- 호도·밤 재배지에 대한 10년간 구조조정 추진
 - 수출감소로 인한 밤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하여 산채류·약용류·수액 등 유망소득작목을 중심으로 대체작목 조성(연간 1천ha)
 - 경사가 완만하여 집약관리가 가능한 곳은 상층에는 고로쇠 등을 식재하고, 하층에는 산채류·약용류 등을 식재하는 등 산림복합 경영형태로 유도
 - 호도·밤 재배면적 감축 : 6만ha, 7만톤 → 5만ha, 5.9만톤 생산
- 호도·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

반 조성

- 기계화를 위한 작업로 시설, 기계장비 보급, 토양개량, 관수시설 및 방제장비 등 경영기반 조성
 - ※ 작업로 시설단비 등 각종 사업단비를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현실화 추진(작업로 단비 : 3백만원/km → 5백만원/km)
- 외국산과 차별화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임산물생산 지원 확대
 - 친환경 호도·밤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
 - 생산이력제 확대시행(산양삼, 수출용밤 → 호도, 표고, 산채류 등)
 - 친환경 호도·밤 등 임산물에 대한 GAP제도 시행을 위한 표준재배지침 마련
 - 항공방제보다는 지상방제를 유도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제 시스템 구축
 - 항공방제를 점차로 축소하고 친환경적인 자력방제 유도
- 밤의 소비를 확대할 수 있고 수출에 유망한 신제품 개발
 - 중국산 수입단밤에 대체할 수 있는 군밤용 신제품 개발
 - 박피가 뛰어나고 밤알이 굵은 신제품 개발 ('07년까지 2품종)
 - 조생종 재배확대를 위한 대립 다수성 품종 개발
 - 출하시기와 노동력을 분산할 수 있는 품종 개발('08년까지 2품종)
 - 수요확대를 위한 고품질 기능성 품종 개발
 -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능성 품종개발('10년까지 2품종)
- 고품질 산채·약용류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
 - 고소득 임산자원 육성을 위한 임산물생산단지 지원 확대
 - ('07년) 13단지 → ('08년부터) 15단지
 - 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동선별비 등 표준출하 사업비 지원
 - ('07년) 248개소 → ('08년부터) 300개소
 -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산양삼 생산이력제 추진
 - ('07년) 3개소 → ('08년부터) 6개소

〈유통분야〉

- 임산물 유통 현대화를 위한 임산물산지유통 시설 지원 확대
 - 현재 임산물 유통시설 지원은 소형 저온저장고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신선도, 소비자의 안전성 요구를 충족하는데 미흡함
 - 임산물에 대한 생산, 가공, 선별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산지유통시설 지원
- 호도·밤 등 임산물의 표준화·브랜드화 추진
 - 규격출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포장자재비 및 공동선별비 지원 확대
 - 임산물에 대한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디자인 개발비 지원
 - 「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」 통한 임산물 종합 유통정보 제공
-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임산물지리적표시 인증제 활성화
 - 지역 특산 임산물의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등록 추진
 - 등록완료 : 양양송이, 정안밤, 산청곶감 등 11개 품목 등록 완료
 - 등록심사 : 상주곶감, 남해창선고사리, 영덕송이 등 3품목
 - 지리적표시등록품목에 대한 디자인 개발 등 예산지원 확대
- 임산물 유통정보제공을 위한 관측사업 확대
 - 주요 임산물을 대상으로 관측 품목 확대(4품목 → 7품목)
 -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내실화 추진

나. 목재생산·이용

〈생산분야〉

- 국산재 원료 구입자금 및 비축자금 지원
 - 국산재의 안정적 공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해 목재가공업체 원료구입자금 지원
 -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입목을 사전 매수할 수 있도록 목재비축자금을 신규 지원
- 벌채시 운재로 시설비 지원
 - 임도, 기계화 미비로 벌채비용이 입목가를 상회하여 벌채를 기피하고 있어 국산재 이용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

- 벌기령에 도달한 입목의 벌채(주벌)시 벌채 및 목재운송 장비의 출입이 가능토록 간이운재로 시설비 지원
- 임업기계 개발 및 보급 확대
 - 한국형 입목장비 및 다양한 기계·장비 보급(12종)
 - 노령화된 기능인이 사용가능한 경량의 기계·장비 개발
- 숲가꾸기 산물 활용 촉진
 -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확대 운영(400명 → 1,000명 수준)
 - 수집된 숲가꾸기 산물을 바이오매스용 보다 보드용 원료 우선 사용
 - 목재 보일러를 사용하는 산촌특화 시범마을 조성(08: 1개 마을)
- 파티클보드 원자재 안정적 공급을 위한 폐목재 재활용 촉진
 - 소각 또는 매립 처리되는 건설 및 생활 폐목재를 재활용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(환경부와 협의)
- 국산재 이용촉진 지원
 - 공공기관 신축 및 국비 지원 산림사업에 목재 소요시 국산재 우선 구매 의무화 추진(자연휴양림, 등산로 시설 등)
- 낙엽송 등 국산재 공급확대를 위한 협의체 구성
 - 5ha 이상 및 IV령급 이상 낙엽송 임지(약 147천ha)를 대상
 - 업계, 지자체, 지방청, 산림청 합동으로 원활한 생산 및 공급추진

〈유통분야〉

- 생산 및 가격동향 등 국내·외 목재유통 정보 수집 제공
 - 목재생산동향, 지역별·규격별 거래가격 등 유통실태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산주, 임업인 및 업계에 제공
 - 목재수출국의 생산 및 가격 동향, 목재정책 등 정보도 함께 관리
- 용도별 목재수급을 위한 목재이용실태조사
 - 목재 수요처별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산주의 생산 목재를 적정한 가격을 받도록 하고, 유통체계가 갖춰지도록 지원
 - 매년 목재 용도별 수급실태, 이용현황, 가격

- 등 조사(1천개 업체)
- 제재업체 실태조사 및 시설 현대화 지원
 - 제재업체 실태조사를 거쳐 경쟁력이 취약한 노후 중소형 제재시설을 구조조정('03년 조사시 719개소)
 - 원목 제재시설은 대형화, 수입제재목 활용 2차 제재시설은 현대화 추진(용가지원)
- 목재규격 제정 및 품질인증제도 도입
 - 목재건축 자재시장은 품질보다 가격 경쟁에 의존하여 저가품의 유통이 빈번하고, 친환경 자재인 목재가 품질인증이 없이 유통
 - 건축자재의 저가품 유통을 방지하고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용도별 사용규격을 제정하고 품질인증제 도입 추진
 - 품질인증 대상품목 확대
 - 목탄, 목초액, 방부목재 → 건조제재목, 합판, 보드류, 마루판 등
- 합판 원자재인 합판용 단판 수입관세 인하
 - 관세인하 시점에 맞추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연차적으로 인하
- 원목운송차량 유류 면세대상으로 지정 협의
 - 목재업체의 원목운송 차량이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 면세(영세유)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

다. 임업의 근본적 체질강화

- 독립가·임업후계자·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 육성을 통해 임업경쟁력 제고
 - 전문임업인 선발 확대 : ('06년) 2,240명 → ('17) 3,500명
 - 생산기반조성 및 임업경영 자금지원으로 임업의 규모화·전문화 유도
- 생산자 단체에 대한 공동소득사업 지원을 통해 임가의 소득기반을 조성
 - 지역별 친환경 고품질 임산물에 대한 공동 소득사업 선정
 -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청정 임산물 이용 가공 및 유통시스템 지원
- 호도·밤 등 소득품목에 대한 전문지도원을 육성하여 맞춤형 기술지도 및 경영컨설팅 실시
 - 특화품목 선정 : ('08) 17품목 → ('10) 19품목 → ('12) 19품목
 - 전문지도원육성 : ('08) 80명 → ('10)

- 200명 → ('12) 200명
- 밤 재해보험 등 소득안전망 확충
 - 호도·밤·대추 등 재해보험의 단계적 도입 추진
 - '07년부터 밤 재해보험의 시범도입 추진 및 단계적 확대
 - 임산물에 대한 재해복구 기준단가 인상 및 추가 품목 고시
 - 밤, 대추 등 12개 품목 → 57개 품목으로 확대
- 산림사업 종합자금 지원 확대
 - 임업인의 소득품목 지원으로 국내 임산물 경쟁력 강화
 - 영세 임업인의 재정 부담 완화로 투자 효율성 증대

3. 향후 추진 일정

- 협상결과 설명 및 영향분석 실시(4월)
 - 협상결과를 임업인단체 등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중앙 및 지방산림공직자, 유관단체 임직원 등의 이해도 제고
 - 품목별 단체와 토론회 및 지역단위 설명회 개최
 - 연구기관(KREI)의 영향분석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협상결과에 대한 정밀한 피해분석 실시
 - 객관성·신뢰성 있는 피해분석 결과 도출
- 국내보완대책 구체화(5~6월)
 - 토론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한 임업인의 의견 수렴과 연구기관의 피해분석 결과를 토대로 종합 지원대책 조정
 - 피해예상 품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을 구체화
 - 한미 FTA 등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농업·농촌종합대책 및 투융자 계획(119조원)을 조정
- FTA이행지원특별법 개정 및 기금 지원규모 수정(7~12월)
 - 국내보완대책을 토대로 임업인단체, 관계부처 등 의견을 수렴하여 FTA이행지원특별법 개정 반영 